

# 부 록

- 서산군세감면조례
- 서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 '94행정사무감사계획
- '94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
- '93예비비 지출승인내역
-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보고
-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내역
-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내역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내역 199면
- 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내역서 204면

## 서산군세감면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 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동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한다) 가 군지역에서 과세기

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 3 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정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충청남도 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 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제10조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 4 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 토

지세를 5년간 면제 한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2.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량사업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 【농의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부의 50 (종합 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의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14조 【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 5 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 (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 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 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 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 의 수입금액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부동산 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

제1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배 기 량	씨씨당세액	
	영 업 용	비영업용
1,000 씨씨 이하	10 원	110 원
1,000 씨씨 초과 2,000 씨씨 이하	10 원	140 원
2,000 씨씨 초과 3,000 씨씨 이하	12 원	165 원
3,000 씨씨 초과	15 원	200 원

### 제 6 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 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 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19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 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 제 7 장 보 칙

제20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1조 【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서산군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산군 지정문화재에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2. 서산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3. 서산군 농의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4. 서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세에 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5. 서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6. 서산군 새마을사업등의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관한 조례
7. 서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8. 서산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9. 서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10. 서산군 지방공사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11. 서산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12. 서산군 국가유공자 단체등에 대한 군세

-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13. 서산군 신체장애자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14. 서산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15. 서산군 종교단체에의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16. 서산군 싼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 제3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1】 **상이등급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 급 (복 합 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라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별지서식】

<b>서산군세 감면신청서</b>				처리기한 7 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 면 내 용	세 목	년도/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합 계			
감면사유	서산군세 감면조례 조			
서산군세 감면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span style="float: right;">㉞ (서명)</span>  <b>서 산 군 수 귀 하</b>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서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하고 제11조 제3항 제2호 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